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58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28.

발 의 자 : 이만희 · 서천호 · 이성권
엄태영 · 구자근 · 김기웅
김상훈 · 이달희 · 권영진
이종배 · 이소희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부담하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,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미납된 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의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.

이에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상의 입법례를 따라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및 대표상속인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상속인의 책임관계와 징수절차의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77조의3 신설).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7조의3(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)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(「민법」 제1078조에 따라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「민법」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(이하 “상속재산관리인”이라 한다)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를 진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를 「민법」 제1009조·제1010조·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후,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.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를 낼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하는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의 납부 고지·독촉

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으면 공단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.

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)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77조의3(상속으로 인한 납부의 무의 승계)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(「민법」 제1078조에 따라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「민법」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(이하 “상속재산관리인”이라 한다)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채납처분비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를 진다.</u> <u>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채납처분비를 「민법」 제1009조·제1010조·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후,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.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</u>

의 보험료등과 채납처분비를
별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
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
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
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하
는 보험료등과 채납처분비의
납부 고지·독촉 또는 그 밖에
필요한 조치는 상속재산관리인
에게 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
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
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으면
공단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
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
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.

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
대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
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
도 효력이 있다.